

학 교 법 인 장 춘 학 원

2019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7인	0인

1. 일시 : 2019. 7. 26.(금) 11:30~12:10 (회의소집 통보일 : 2019. 7. 17.)

2. 장소 : 안동과학대학교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7명	신정용, 권기덕, 권재주, 임규봉, 서재수, 심용선, 김선웅	
	감사 0명	-	
불참 임원	이사 1명	김미현	
	감사 2명	이시우, 금정호	

4. 안건

- 1)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4) 기타사항

5. 회의내용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개회시간이 되어 심홍재 사무국장이 참석임원을 보고하자 신정용 의장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심홍재 사무국장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사회의 구성과 업무, 회의안전에 대하여 간략 하게 보고하다.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 사	권재주	이 사	임규봉
------------	-----	-----	-----	-----	-----	-----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1호)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현황, 예산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수립된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총액으로 등록금 회계 15,586,562,136원, 비등록금 회계 14,333,695,850원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과목별 주요 내용 및 금액을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서재수 이사는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현황,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등 재정관련 변경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편성한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심용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2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2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이 2019. 8. 1자로 시행됨에 따른 정관 개정 사항을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임규봉 이사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관에서 강사의 임면에 대해 정하고, 자세한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 사	심홍재	이 사	임규봉
------------	-----	-----	-----	-----	-----	-----

사항은 임면권자인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2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재주 이사의 동의와 권기덕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3호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다.

(의안 제3호)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권재주 이사는 신정용 이사장과 임규봉 이사, 서재수 이사를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으로 선출할 것을 개진하다.

신정용 의장은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심용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으로 신정용 이사장, 임규봉 이사, 서재수 이사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고, 의안 제4호 기타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의안 제4호) 기타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대학에 설치하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법인 및 대학 주요 현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임원 일동 대화 토론 후,

임원일동은 대학에 설치하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권기덕 이사, 서재수 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의안 제4호 의결내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함을 전원 이의 없이 동의한 후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시다.

6. 폐회선언

신정용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12:10)

대 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용	이 사	권재주	이 사	임규봉
------------	-----	-----	-----	-----	-----	-----

현행 정관	개정(안)
제39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임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3항의 경우에는 이사장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학의 장 이외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10.16., 2015.12.17.>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대학의 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6., 2015.12.17.> ④ ~ ⑤ (생략)	제39조(임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대학의 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u>단,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강사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u> <개정 2015.10.16., 2015.12.17., 2019.8.1.>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7.> 2. ~ 4. (생략)	제52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1.<u>조교수, 강사 임면에</u>.....<개정 2015.12.17., 2019.8.1.> 2. ~ 4. (현행과 같음)
	부칙<2019. 8.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표 간서명	이사장	신정남	이사	김민석	이사	이규복
-----------	-----	-----	----	-----	----	-----

학교법인 장춘학원 이사장

신정용 신정용

이 사

권기덕 권기덕

이 사

권재주 권재주

이 사

임규봉 임규봉

이 사

서재수 서재수

이 사

심용선 심용선

이 사

김선웅 김선웅